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December 2012
52th January 2013

- ▶ WHERE IS GRACE CHANG?:
선순환의 법칙 2
- ▶ ABOUT WRITERS 2
- ▶ COVER STORY:
신한인이 선정한 2012 년 이슈 BEST 10 3
- ▶ FTA NEWS:
2012 년 FTA 이슈와 2013 년 다가올 FTA
이슈들 5
- ▶ VOICES FROM THE FIELDS:
현장에서 들어보는 세관장확인제도 6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7
- ▶ CUSTOMS PRECEDENT ㉔ 8



HAPPY NEW YEAR!



SHINHAN Since 1965
CUSTOMS SERVICE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WHERE IS GRACE CHANG?

선순환의 법칙



장승희
 대표 관세사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반칠환 '새해첫기적' 중에서

말이나 달팽이, 모두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해 첫날을 맞이하러 도착했습니다. 똑같이 보낸 1 년이지만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가서 살아온 한 해와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며 살아온 한 해가 같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 첫날! 두근두근 기대감을 갖고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해야 일년후의 새해 첫날에 제대로 도착할 것인지요.

공 심은 데는 공이 난다고 합니다. 동화 속 Jack 의 콩같이 하늘 위 보물이 있는데 까지 자라나는 beanstalk 은 아니라도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좋은 콩을 한알 한알 심어야 하겠습니다.

2012 년 12 월호와 2013 년 1 월호를 합본으로 보내드립니다.

Cover Story 는 지나간 2012 년의 베스트 이슈들을 살펴보고, FTA News 는 2012 년을 돌아보며 2013 년을 대비할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는 「현장에서 들어보는 세관장 확인제도」 입니다. 수입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들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관세법」!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50 점 입니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등 35 개의 법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 우르릉- 삶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해가 끝나는 시점에 마주할 선하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 굴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시간과 함께 굴러가며 그 목표가 더욱 커지고 확고해지기를, 여러분의 삶에 선순환이 정착되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기를
 더욱 더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신한인이 선정한 2012 년 이슈
 BEST10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

FTA News-

2012 년 FTA 이슈와 2013 년 다가올
 FTA 이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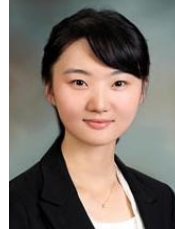
차 미 정 관세사
mjch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 본사 통관 3 팀
- 인천 FTA 활용지원센터 파견

Voices From The Fields-

/관세 법령 변경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임 보 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공항지사
- 28 기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Customs Precedent ☺

교육기관 판매용 특별할인액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이 화 영 관세사
hy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본부
- 관세환급 전담 관세사

Cover Story

신한인이 선정한 2012 년 이슈 BEST 10

신한관세법인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건 BEST10 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 해간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며 지나간 일들을 되새겨 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준비를 잘하여 다가올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한미 FTA 의 발효

한-미 FTA 가 3 월 15 일을 기하여 공식 발효되었다. 2007 년 4 월 한국과 미국 정부의 협상이 타결된 지 4 년 11 개월만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과 미국 이라는 거대 경제권 2 권역과 FTA 를 발효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협상진행과정에서 갈등과 진통을 겪으며 한때 발효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발효 이후 수혜 업종인 자동차, 기계, 섬유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FTA 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고,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무역 1 조 달러, 무역 규모 8 강 진입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 년 연속 무역 1 조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규모 세계 8 강에 진입하였다. 세계적인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거둔 배경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FTA 의 효과적 활용, 중소기업의 약진, 신시장 개척, 기존 주력 품목 이외의 선전 등을 꼽았다. 또한, EU 의 경기침체에 따른 급격한 시장 수요 감소에 대하여 아세안, 중동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수출 다변화 전략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한 것이 무역 1 조 달러의 선전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유럽발 경제위기의 지속

유럽발 재정위기는 지역의 재정위기의 수준을 넘어서 세계경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발 재정 위기는 EU 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중국과 한국등의 수출국가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럽계 금융자본 역시 리스크 축소를 위한 디레버리징에 자본 운용의 초점을 맞추면서 유럽계 자본의 출입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한국의 자본시장 역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경제 상황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 될 것으로 여겨지므로 장기 불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4. 원화 강세 기조의 지속

2012 년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거듭하더니 10 월 25 일 달러당 1095.00 원을 시작으로 1100 원선이 붕괴되어 12 월 20 일에 이르러서는 1073.50 원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원화강세 추세는 최근 10 개월간의 연속 무역흑자 등을 그 요인으로 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원화강세 기조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등락의

양상을 보이진 않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화강세 추세가 2013 년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5. 세액 변경 방법의 개정

납부한 관세의 세액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의 조문이 개정 되었다. 개정 전 납세의무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과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 가지 제도(보정, 수정신고, 경정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액 변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번 개정을 통하여 납세의무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 만을 상술한 세 가지 제도(보정, 수정 신고, 경정)를 통하여 세액변경을 할 수 있고, 과다 납부한 세액은 오직 경정 청구를 통하여 세액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서는 변경 시기와 관계 없이 과세관청에 경정 청구를 해서 세액을 변경해야 한다.

6.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과세표준 조화 제도의 신설

최근까지도 관세청의 과세기준과 국세청의 과세기준이 상호 충돌하여 납세의무자의 법적 예측성을 저하 시키며, 이와 관련하여 외국계 기업들이 불만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은 『국제 조세조정예 관한 법률』 및 『관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세액 변경 처분을 받고, 이로 인해 납부한 관세도 함께 변경 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세관장에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 의무자는 세관장의 경정에 불복하는 경우 기획 재정부장관 에게 조정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7. 세계 각국의 세율 인상과 수입요건 강화

유럽 발 재정 위기로 시작 된 세계 경기 침체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게 하였다. 실제로 러시아는 수입 차량에 대하여 폐차비용 명목의 세금을 새롭게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도 주요 전자제품의 관세를 인상 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수입허가제와 사전 수입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입 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수출업체는 기존의 거래처 및 새로이 발굴한 거래처와 거래에 앞서 해당국가의 세율이 인상되었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이 추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8. 한국 제품의 덤핑 피제소율 증가

미국 정부는 지난 3 월의 냉장고에 이어, 12 월에도 삼성, LG, 대우가 제조한 세탁기에 대하여 최종 덤핑판정을 하였다. 해당 사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종 부과 결정은 추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최종적으로 판

단하게 되지만, 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2012 년에 한국산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19 회에 걸쳐 반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 년전인 2010 년 8 회의 2 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써, 급격히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이런 세계적 추세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각 수출업체 에서는 물품 수출 전에 해당 물품이 덤핑 예비판정 혹은 최종판정을 받은 품목군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9. 석유제품 전체 수출 1 위

올해 한국산 석유제품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를 제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금액 기준으로 1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에서 파생된 석유화학 제품도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등의 무서운 추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석유제품이 2012 년에 이렇게 선전한 이유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는 중남미와 아세안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 및 석유제품 수출단가 상승등을 그 이유로 평가했다.

10. FTA 효과 본격화(수입물가 하락)

FTA 의 수출확대효과 이외에 수입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자 혜택이 점차 가시화 하고 있다. FTA 발효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품목은 오렌지-체리 등 미국산 과일류이며, 과일류를 가공한 과즙음료 등의 가격인하 효과도 본격화 하고 있다. 또한 2012 년 1~10 월에는 수입자동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를 넘어서면서 미국산, EU 산등 자동차 부문의 가격인하 효과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한-미 FTA 에 따른 미국산 물품의 가격인하는 EU 산 물품과의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EU 산 소비재(다리미 등 생활가전기구등 9 종 품목)의 가격을 인하시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FTA 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효과는 앞으로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2012 년 FTA 이슈와 2013 년 다가올 FTA 이슈들

어느덧 2012 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돌아해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특히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슈는 바로 한-미 FTA 발효 (2012.03.15)일 것이다. 2007 년 한-미 FTA 는 체결되었지만, 국회비준동의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4 년 동안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한-미 FTA 는 올해 3 월 발효 후 8 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 섬유산업, 고무제품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큰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발효 이후(2012.03.15~10.31) 동기간 對 세계 수출은 3.4% 감소하였으나, 對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였다. 이는 한-미 FTA 혜택품목의 12.9%의 수출증가율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에 타결된 여타 FTA 보다 발효에 앞서서 산업간 갈등과 우려가 높았지만, 한-미 FTA 의 수출활용률은 현재 66%로 다른 FTA 와 견주었을 때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영향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지만, 한-미 FTA 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한국산 물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는 불황 타개하는 지름길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발효(2011.07.01) 이후 1 년 6 개월이 되어가는 현재 EU 회원국은 발효일로부터 올해 10 월까지 우리세관에 202 건의 원산지 1)검증요청을 하였다. 이러한 요청 중에 폴란드의 원산지 검증요청은 58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FTA, ASEAN 등의 회원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원산지 증명서 활용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현재 원산지 사후관리가 더욱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검증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 원산지 위반사항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대리서명, 인증수출자번호 허위기재·오류, 인증수출자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발행, 근거서류 미보관 등이다. 검증 이후 원산지 위반이라는 결정과 더불어 행정적 제재,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 스스로 원산지 사전진단 및 관리에 힘써야 한다.

2013 년에는 다가올 FTA 관련 이슈 사항들이 더욱 더 다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터키 및 한-콜롬비아 FTA 의 내년 중 발효와 더불어 이들 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적으로 수출선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한-터키 FTA 의 경우 한국과 터키 수입액 기준으로 10 년이내 약 100% 관세가 철폐 예정이다. 특히 터키에서는 우리나라 주요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칼라 TV 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7 년이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련하여 수출자 (인증 수출자가 아니어도 가능)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율방식으로 인보이스 신고방식이며, 간접검증방식으로는 한-EU FTA 원산지 검증제도와 유사하다.

둘째, 한-콜롬비아 FTA 는 협정 발효 후 10 년 이내에 대부분의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 예정이다.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승용차는 10 년, 자동차부품·섬유·타이어의 경우 5 년 이내 관세 철폐로 인한 혜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가 증명하는 자율

방식이며, 원산지검증은 직접 검증 방식과 간접 검증 방식을 모두 채택한다. 셋째, 2011 년 7 월 발효한 한-EU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인 2 년인 2013 년이 도래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의 연장을 위해 기업내부적으로 원산지 관리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슈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내년을 대비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다. FTA 체결로 인해 세계경제영토 60%정도가 한국으로 편입된 현재, FTA 업무는 원산지관리전문자만의 독점적업무가 아닌 전사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에서 FTA 활용으로 인한 발전으로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기업의 효과적인 FTA 활용함으로써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단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상품들이 세계를 호령할 날을 기대해 본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차 미 정

mjcha@customsservice.co.kr

1) 한-EU, 아세안, 칠레, EFTA 등은 간접검증의 방식으로 수출국세관이 수입 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미 FTA 의 경우에는 미국세관에서 직접 국내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는 직접검증방식이다. (단, 섬유의 경우는 간접검증)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는 세관장확인제도

I. 개요

당사의 A 고객사로부터 수입서류가 입수되었다. A 에션 의류를 주력으로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 서류에는 품명이 "TOY"라고 적혀있어 확인해 보니 해외 박람회에서 플라스틱 인형이 눈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팔아 볼 생각으로 수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이를 어쩌나? 이러한 완구류는 자율 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서 수입통관 전에 그 형식승인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다. 형식승인 절차는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하므로 향후 수입계획이 불확실하다면 이를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A 에서도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다시 반송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는 수입 시 흔히 간과할 수 있는 세관장확인대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최근 개정된 세관장확인 대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세관장확인제도

1. 의의: 수출입 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표시·기타조건(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 226 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동법 시행령 제 233 조 (구비조건 확인) 에 있다.

2. 대상: 현재 통관단계 요건확인대상 총 법령 65 개 中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은 35 개 품목은 5,527 개(HS 10 단위 기준 45% 비중) 「식품위생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3. 절차

- ①입항: 보세구역 반입
- ②요건확인 기관: 허가(승인, 신고 등)
- ③세관: 수입신고
- ④세관: 요건확인기관 허가 확인
- ⑤세관: 수입신고 수리

III. 세관장확인대상 확인방법

1. HS CODE 확인

세관장 확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수출입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관장확인대상은 HS CODE 별로 연계되어 해당여부가 고시 되어있기 때문이다.

2. 세관장확인대상지정고시 확인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 후 「관세법제 226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 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상에 HS CODE 별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확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확인생략물품 (세 관장확인고시 제 3 조) 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다.

IV.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사항 (관세청 고시 제 2011 - 53 호, '11. 12. 26)

1. 대상 품목 조정

(중복세번 삭제 시 5,527 개 → 5,502 개, △25 개)
프로포폴, 석궁, 석면 등 수출 56 개, 수입 30 개 신설, 유아용 섬유제품 등 수출 3 개, 수입 95 개 삭제 및 기타 관련 법령 개정 등 반영

2. 수출

- 대상품목: (현행) 11 개 법령.1,215 개 → (개정안) 11 개 법령.1,268 개 (+ 53 개)
- 신설: 「가축전염병예방법」 설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프로포폴, 「총포·도검 단속법」석궁 등 56 개
- 삭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세번 오지정 에 따른 삭제 3 개
- 요건변경: 「야생동식물보호법」법 제명 개정 703 개

3. 수입

- 대상품목: (현행) 34 개 법령.6,626 개→ (개정안) 34 개 법령.6,561 개(△65 개)
- 신설: 「마약류관리법」프로포폴, 「석면안전 관리법」(12.4 월 시행) 활석 등, 「총포·도검 단속법」 석궁 등 30 개
- 삭제: 「공산품안전관리법」유아용 섬유제품 등 95 개
- 요건변경: 「야생동식물보호법」법 제명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 등 989 개

4. 기타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 신청 대상 업무 확대, 관세청, 행정규칙 정비비용역 (한국법제 연구원) 지적사항 반영 등

V. 결론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1)통합공고에 정해져 있는 품목은 수입 후 해당 법령에 따라 허가, 승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즉, 수입통관 시 아무런 제재가 없지만 수입물품을 유통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 승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품목도 있다는 것이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령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입 전 전문가와 상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m@customsservice.co.kr)

1)통합공고란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 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한 것을 말한다.

'10 '11 '12.10 월 '13(안)

품목수 (hsk10 단위)	4,848 개	4,964 개	5,527 개	5,502 개
대상 법령	35 개	35 개	35 개	35 개
수입신고 비율	43%	47%	45%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제정이유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의 발전(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이 인정되므로 3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7612.90.9010 호) 중 용적이 196 밀리리터(ml) 이상 952 밀리리터(ml) 이하인 것
- 나. 덤핑방지관세율 : 4.59%
-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다만, 유니버설 캔(Universal Can Corporation)은 제외
라. 적용기간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2012.11.30)부터 3 년간임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신고인(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류점수 중복산정 배제, 란별 오류점수 상한선 도입 등 오류점수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2. 주요개정내용

- 1) 오류점수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
 - 오류점수 상한선 도입: 란별 부과가능한 오류점수의 한도를 정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오류점수부과(8 조 ②항 신설)
 - 오류점수 중복산정 배제: 수출입신고서 공통항목*의 정정으로 2 개 이상 란의 신고내용이 함께 정정되는 경우 1 개 란의 오류점수만 부과하도록 개선 (8 조 ①항 10 호 신설)
 - 중요도에 따른 오류점수 조정: 심각한 신고오류로

수출입통계 집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정수치 과다(100 배이상)와 신고각하·취하의 오류점수를 상향* (8 조 ①항)

- 2) 오류점수 보류제도 확대 (7 조 ①항)
 - 오류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시, 세관장이 확정판단 기한(5 일)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오류점수 부과결정을 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도록 개선*
- 3) 오류점수 부과 제외대상 확대 (4 조 ②항 13 호 신설)
 - FTA 협정관세 적용 사후신청*에 따른 정정(수입 신고서) 및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 정정(수출신고서)의 경우 오류점수 부과 제외

- 4)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 부여 (14 조 및 별표 3 신설)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업체)의 경우 행정 제재시 제재일수 경감 특례를 부여
- 5) 오류점수(비율)별 검사비용 상향조정 완화 (별표 2)
 - 현행 수출입신고검사비용*을 고려하여 검사 비율의 상향조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 * 검사비용 : 수입(2.3%내외), 수출(0.1%내외)

3. 시행시기

2013. 01. 01(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안 제 4 조의 6 신설)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하는 방식에 의함.

나.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안 제 9 조의 9 신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서류로 하며,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표시하는 문구를 추가함.

다. 원산지 결정기준(안 제 12 조제 9 호)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함.

라.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 17 조제 9 호 신설)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에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함.

마. 상대국의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 (안 제 24 조제 7 호 신설)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한 경우 10 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 년 11 월 22 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상계 관세·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가.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 3 조제 10 항 및 별표 6 의 5 신설)
- 나.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 4 조의 9 신설)
- 다.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 4 조의 10 신설)
- 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 8 조의 19 부터 제 8 조의 21 까지 신설)

마.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 15 조의 2)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하
(bhlim@customsservice.co.kr)

Customs Precedent ⑫ 조세심판원 판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교육기관 판매용 특별할인액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국심 2003 관 0034)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스터디하였다. 각 결정례는 유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정정식 관세사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 거래사실

1. 거래당사자

▶ 청구법인은 Technologies Europe B.V (55.89%)와 Technologies World Trade Inc(44.11%)의 합작법인임

▶수출자와는 국내 대리점 계약 (Domestic Distributor contract)을 체결하여 계측기, 화학분석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함

2. 수출물품 가격 정책

1) 일반용 판매

수입자가 계측기 등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IC (Inter Company; 내부자 거래용)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함

2) 교육용 판매

수입자가 계측기 등을 국내의 교육기관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는 IC 할인율에 추가적으로 20% 특별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함

청구법인은 상기의 특별 할인율이 적용된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함

□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 이외의 교육기관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율(20%)이 적용되고 있음. 마케팅 전략에 의하여 소비자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가격정책으로 교육용 판매에 대한 할인은 관세법 제 3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 아님

=> 즉, **할인된 금액을 과세금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함**

□ 처분청 의견

수입 후 교육기관에 판매한다는 조건과 교육기관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처분의 제한에 의하여 추가 20% 특별할인을 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할인이라 할 수 없음
교육용도 일반용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보증(warranty)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물품이 교육용으로 특별할인 받아 수입된 것임
=> 즉,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으로서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쟁점

교육용으로 특별할인을 받아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관세법 제 30 조 제 1 항

(생략)

관세법 제 30 조 제 3 항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 31 조 내지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이하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 21 조 제 1 항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사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이하생략...)

□ 판 단(결정)

일반 판매용과 교육기관 판매용 물품간의 구성내용, 기능, 성능등이 모두 동일함
일반 판매용 물품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에도 warranty 정책이 적용되고 있음
수입 후, 교육기관에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20% 특별할인을 적용함

일반 판매용 물품과 쟁점물품 간에는 물품자체의 차이점은 없으며,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특별 할인 20%를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검토의견

1. 거래가격채택 요건 충족여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 1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즉, 교육용으로만 판매하도록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특별할인 20%가 적용되었듯이 거래가격은 왜곡된 가격으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

2. 과세가격의 결정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제 2 평가 방법 내지 제 6 평가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화 영

(hylee@customsservice.co.kr)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Shinhan